힘내라 대한민국 / 식품의약품안전처	보도참고자료	배 포	2020.5.26.(화)
		담 당 과	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표시인증과 (☎043-719-2863)
		과 장	오정완 (☎043-719-2851)
		사 무 관	이제명 (☎043-719-2854)

식품 및 축산물 HACCP 제도, 영업자 부담 줄인다.

교육 운영, 인증 신청 등 절차·방식 합리적으로 개선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(HACCP) 제도에 따른 **교육 의무 및 인증신청 절차** 등 **규제**를 **개선**하여 영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
■ 해썹(HACCP) 교육 합리적으로 개선

○ **식품 HACCP 신규 인증**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업소 대표자 대신 HACCP 총괄담당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,

- **축산물 HACCP**의 경우 **인증** 신청 시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나, **인증 후 6개월 이내 교육**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개선합니다.

○ 아울러, **축산물 HACCP 정기조사**에서 평가항목의 95% 이상 적합인 **우수 업소**는 다음 해 **정기 교육 면제**를 추진합니다.

■ 해썹(HACCP) 인증 신청 절차 간소화

○ **식품 HACCP 인증 연장 신청** 시 반드시 인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, 인증서의 분실·훼손 등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**사본 제출**도 가능하도록 **인정**할 예정입니다.

OPEN 공공누리
마스크·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02-2640-5080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○ **축산물 HACCP 인증 신청** 시 관리항목 전체의 내용을 포함한 방대한 분량의 **‘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’**을 제출했어야 하나,

- 영업자의 시간·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요관리점(CCP) 등 핵심사항만을 기재한 **‘안전관리인증계획서**(HACCP Plan)’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합니다.

○ 또한, **축산물 HACCP 인증 변경 신고**사항을 **‘중요관리점’**과 **‘소재지’**로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 혼란과 행정 부담을 개선합니다.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집중적으로 발굴해 영업자가 HACCP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, 불시평가 등을 통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붙임 HACCP 제도 주요 개선 과제

OPEN
마스크·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02-2640-5080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붙임 HACCP 제도 주요 개선 과제

연번	구분	식품		축산물	
		현행	개선	현행	개선
1	영업자 신규교육 대상자	영업자(대표)	영업자(대표) 또는 영업자가 HACCP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하여 그 종업원에 대해 실시 가능	영업자(대표) 또는 영업자가 HACCP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하여 그 종업원에 대해 실시 가능	-
2	인증연장 신청서류	인증서 원본	인증서 사본	인증서 사본	-
3	인증신청 서류	안전관리인증 계획서 (HACCP Plan)	-	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 (HACCP 관리 기준서)	안전관리인증 계획서 (HACCP Plan)
4	인증 변경사항	중요관리점 및 소재지	-	중요관리점 및 인증받은 사항	중요관리점 및 소재지
5	교육이수	인증 후 6개월 이내	-	인증 신청 이전	인증 후 6개월 이내
6	정기교육 면제	정기 조사·평가 만점의 95% 이상 받은 경우	-	2년 이상 정기교육 이수하고,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	정기 조사·평가 만점의 95% 이상 받은 경우

OPEN 공공누리
마스크·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02-2640-5080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